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이의신청 결과 통보의무 보완〉

■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06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이의신청 결과 통보의무 보완 ..... | 3  |
| 가. 개정안의 내용 .....         | 3  |
| 나. 검토의견 .....            | 5  |
| 다. 관계 기관 의견 .....        | 11 |



## I. 개요

### 1.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062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광상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5. 26.
- (3) 회 부 일 : 2026. 5. 27.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한,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기초연금법」 제22조제1항은 기초연금 지급 등에 대한 결정이나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기초연금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기초연금법」 제22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임. 또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재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기초연금법」 제22조의 규정만으로는 「기초연금법」에 결정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제22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제5항 신설).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이의신청 결과 통보의무 보완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결정 등에 관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내용과 구체적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제5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22조(이의신청) ①·② (생략)                                          | 제22조(이의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 <신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설&gt;</u></p> | <p><u>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u>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의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 등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다투고자 하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등이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쟁송수단에 관한 사항을 적시에 충분히 설명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sup>1)</sup>

### 1) 「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결정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더라도, 이의신청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의 기간 자체가 단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3월 법률 제17979호로 제정·공포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sup>2)</sup>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sup>3)</sup>

반면, 「기초연금법」은 이의신청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sup>4)</sup> 이에 따른

---

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행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기초연금법」

**제22조(이의신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하·기각 또는 취소·변경의 결정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sup>5)</sup>

「행정기본법」의 취지와 다른 ‘이의신청 처리기간’이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안 제22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이후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 접수부터 결정·통지까지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최대 10일 연장 가능)’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기본법」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따른 처리기간이 계속 적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한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기초연금법」상의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이의신청 접수부터 결정·통지까지의 처리기간의 경우에도 「행정기본법」과 동일하게 14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1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이의신청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다.

연장)로 규정하거나, 「행정기본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과 같은 내용을 「기초연금법」에 규정하려는 안 제22조제4항을 신설할 실익이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에서는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sup>6)</sup>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면서(제5조 제1항),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행정기본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6조제6항),<sup>7)</sup>

6)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초연금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면서 재송수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종전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정보만이 안내되었으나,

동 서식은 2025년 3월 신설된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심판 심판청구서 제출’이나 ‘행정소송 재판관할’을 안내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2025년 9월 19일 개정·시행되었음.

<[별지 제5호서식]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개정 전·후 비교(일부)>

| <p>(舊) 「기초연금법 시행규칙」<br/>(보건복지부령 제1112호)<br/>&lt;'25. 5. 14., 타법개정, '25. 7. 19. 시행&gt;</p>                          | <p>(現) 「기초연금법 시행규칙」<br/>(보건복지부령 제1125호)<br/>&lt;'25. 9. 19., 타법개정, '25. 9. 19. 시행&gt;</p>                                                                                                                                                                                                                                    |
|--------------------------------------------------------------------------------------------------------------------|------------------------------------------------------------------------------------------------------------------------------------------------------------------------------------------------------------------------------------------------------------------------------------------------------------------------------|
| <p>[별지 제5호서식]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통지서</p> <p>○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p> | <p>[별지 제5호서식]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통지서</p> <p>○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li> <li>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li> </ol> |

| <p>(舊) 「기초연금법 시행규칙」<br/>(보건복지부령 제1112호)<br/>&lt;'25. 5. 14., 타법개정, '25. 7. 19. 시행&gt;</p> | <p>(現) 「기초연금법 시행규칙」<br/>(보건복지부령 제1125호)<br/>&lt;'25. 9. 19., 타법개정, '25. 9. 19. 시행&gt;</p>                                                                                                                                                                                                                |
|-------------------------------------------------------------------------------------------|----------------------------------------------------------------------------------------------------------------------------------------------------------------------------------------------------------------------------------------------------------------------------------------------------------|
|                                                                                           | <p>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p> <p>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피청구인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또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피청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p> <p>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p> |

##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및 제6항8)에 따라 「기초연금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결과 통지의무가 이미 적용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입법 실익은 제한적이며, 현행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9)에 따라 행정청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현행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이의신청 결정서)에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미 수급자의 권리구제 절차 이용에 필요한 안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506

### 8)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9)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이의신청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다.